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90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허 영 · 김승원 · 박 정  
이해식 · 서삼석 · 한민수  
문진석 · 홍기원 · 박상혁  
소병훈 · 김태선 · 김영환  
정진욱 · 박용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항, 제25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를 “제80조부터 제85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를 “5천만원 이하, 제2호”로,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2호”로,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를」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③ 제1항 및 제2항-----  
-----  
-----  
-----.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

부터 제85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  
-----5천만원  
이하, 제2호-----  
-----  
-----  
-----제3호-----  
-----  
-----.

<삭 제>

<삭 제>

<삭 제>

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 6. (생략)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  
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

② -----  
-----제1  
호-----  
-----제2호-----  
-----  
-----제4호-----  
-----  
-----.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신 설>

③ · ④ (생 략)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